

瑞山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(案) 檢 討 報 告

1. 提出者：瑞山市長

2. 提出日字：1998. 8. 21

3. 提案理由

- IMF지원 이후 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,
- 최근 소값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어, 자가 소비용 도축에 대한 도축세 면제로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켜 농촌경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4. 主要骨子

-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60㎡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85㎡ 이하로 확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,
-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토록함.

5. 檢討意見

- 본 개정조례(안)은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로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세감면조례로써,
- 행정자치부장관이 세제 13400-611('98.5.29)호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(안)을 일괄허가 하고, 충남도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조례개정 선행절차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며,
-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